

『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
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11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1월 26일

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이 관 응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,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법 적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당초 : 「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
 - 변경 : 「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
-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촉 및 위원 자격 개정 사항 정비(제2조)
-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 자격 조항 삭제
(제12조, 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
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- 본 『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 - 상위 법령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‘구미시경리관’에서 ‘민간위원 중에서 호선’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,
 -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한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 자격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제명을 「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는 내용임.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,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